



경기도 UNIVERSAL DESIGN
장애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1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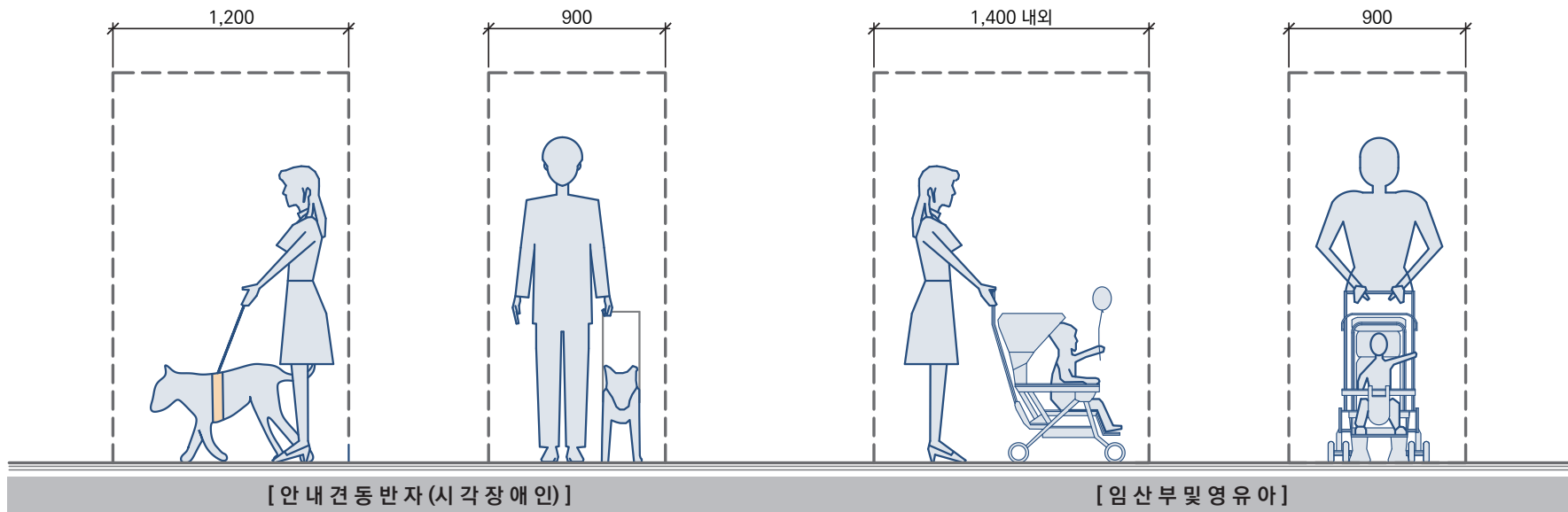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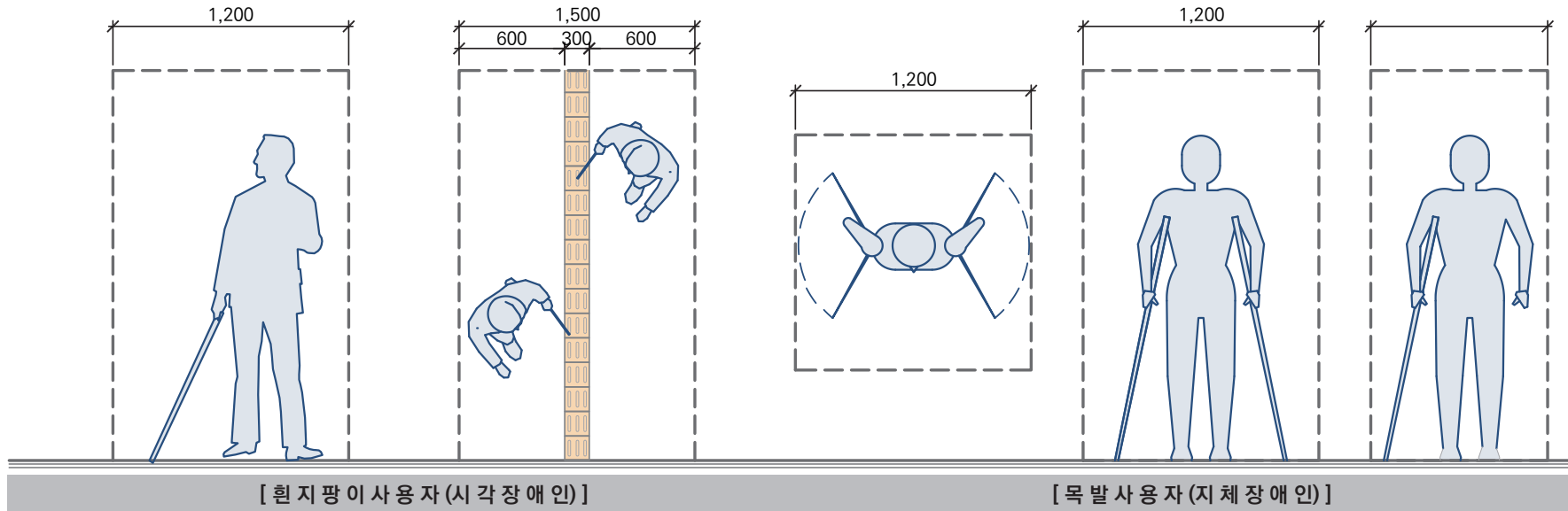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I. 이용자 특성 고려사항	5
II.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7
III.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종류	13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	13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종류	21
IV.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31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3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6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주출입구(문)	42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43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47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51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55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승강기	58
9.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61
10.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휠체어리프트	62
1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64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72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74
14.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76
15.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안내설비	80
16. 장애인 등의 대피가 가능한 경보·피난설비	83
1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84
1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88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91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92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95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96
2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97
V.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101
VI. 부록	131



이용자 특성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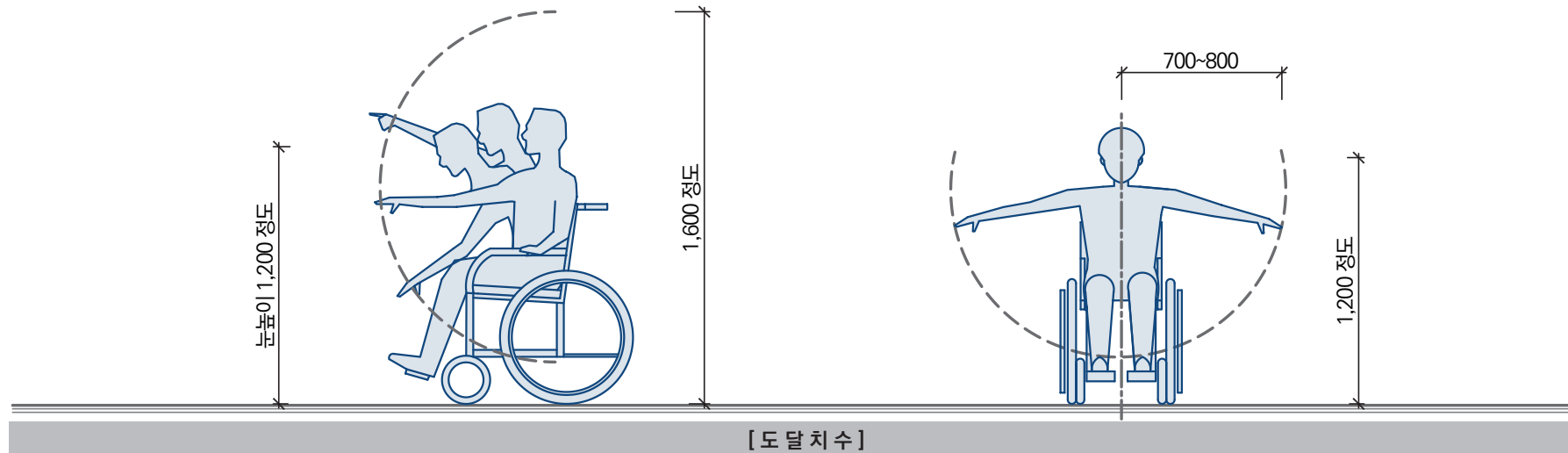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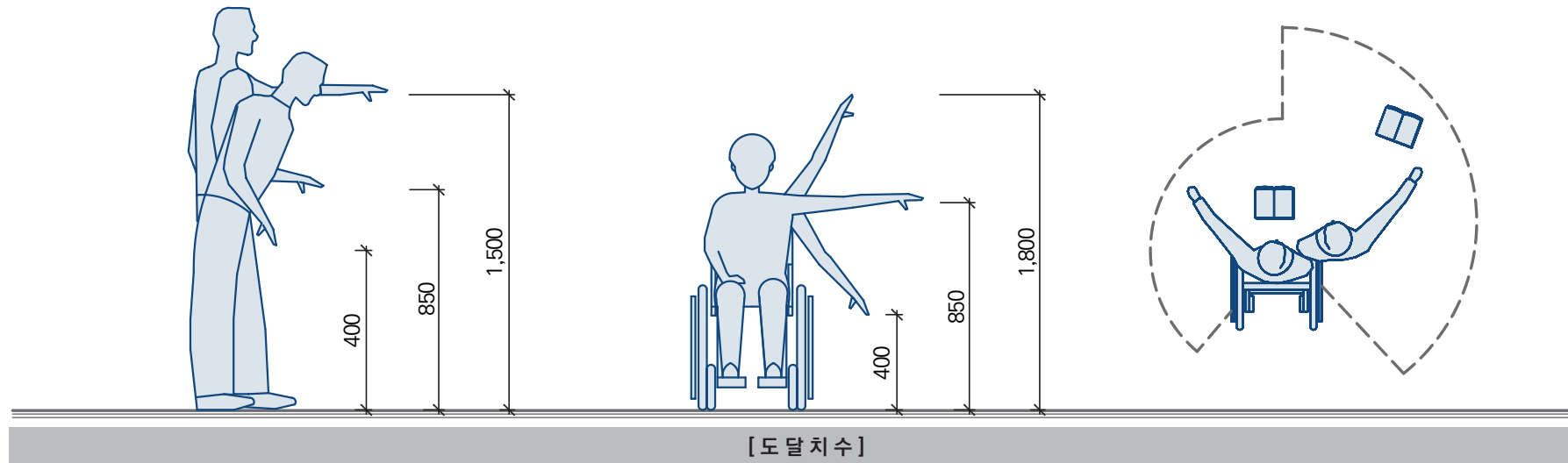


(단위:mm)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이용자 특성 고려사항



(단위:mm)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1] [시행 2020.10.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20.10.27., 일부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공원	1. 공원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독교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안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30>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판매 시설	1.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의료 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 연구시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노유자 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수련 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동 시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속되는 건축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업무 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숙박 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30>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공장	1.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교정 시설	1.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 통신시설	1.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묘지 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광 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례 식장	1.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공동 주택	1. 아파트 2.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3.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통신 시설	1. 공중전화 2. 우체통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파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II.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종류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1.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6)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들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선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선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8.1.30>

-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 (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3.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참고사항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 4.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및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 ‘나. 표’에서 위생시설인 화장실이나 욕실의 설치에 대한 의무 혹은 권장 규정은 ‘가. 일반사항’에 의하여 적용됨
 - ‘가. 일반사항의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이라 함은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이하생략)’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 표’의 규정에서 화장실과 세면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것은 장애인전용주택에 한함
 -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일반개별 침실과 화장실이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일반사항과 달리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일반사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위생시설의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대는 의무설치로 하여야 함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4. 통신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수퍼마켓·일용품 등)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이용원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미용원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파출소, 지구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우체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보건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공공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치과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한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조산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음식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제과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극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영화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연예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음악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서커스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미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경마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동차 경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예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공회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회의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박물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미술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과학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문화및집회시설	기념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산업전시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박람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동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수족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시설	교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성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사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기도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소매시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시설	종합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치과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한방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정신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의료시설	요양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전염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마약진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초등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중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고등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전문대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대학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특수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육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직업훈련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경로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장애인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청소년문화의집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유스호텔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청소년수련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청소년야영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시설	체육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육상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구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볼링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수영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스케이트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롤러스케이트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승마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격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궁도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골프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안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업무시설	국가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지방자치단체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신문사, 오피스텔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생활숙박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장	공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요지관련시설	화장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 침실	관람석 · 열람석	접수대 · 작업대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페이지		31	36	42	43	47	55	64 ~ 71			72	74	76	80	83	84	88	91	92	97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어린이회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동주택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Ⅲ.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Ti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울기</th><th>경사도 (°)</th><th>경사율 (%)</th></tr> </thead> <tbody> <tr> <td>1/8</td><td>7.1</td><td>12.4</td></tr> <tr> <td>1/12</td><td>4.78</td><td>8.3</td></tr> <tr> <td>1/18</td><td>3.175</td><td>5.5</td></tr> </tbody> </table>	기울기	경사도 (°)	경사율 (%)	1/8	7.1	12.4	1/12	4.78	8.3	1/18	3.175	5.5		
기울기	경사도 (°)	경사율 (%)												
1/8	7.1	12.4												
1/12	4.78	8.3												
1/18	3.175	5.5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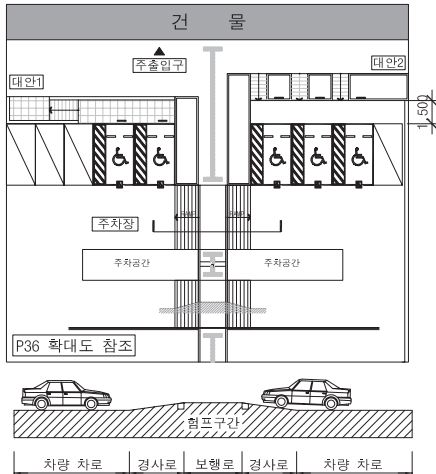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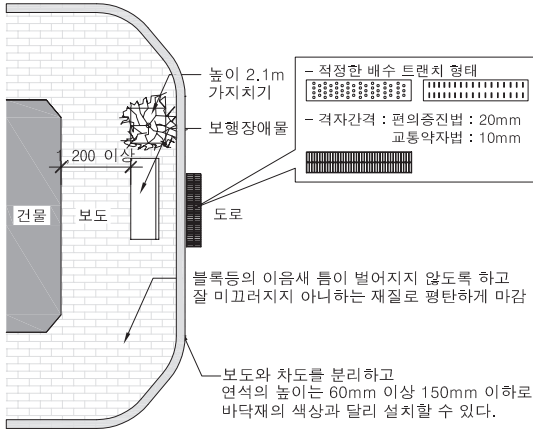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편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Tip! 기존의 넓은 간격의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덮개를 덮어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 m)	사례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지상일 경우		
(나) 지하일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로는 법적도로너비와 별도로 유효 폭 1.2m를 확보 기존: 통행구간 바닥면 구분 - 의무사항(색상/질감) 기존 주차장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색상구분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Tip! 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연속해서 설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나, 한 개소만 설치하는 등 다른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선의 경우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잘못된 예 보행안전통로 유호 폭 1.2m 이상 표차 분리 설치 바닥 재질 및 색상 등을 구분 * 표준형 (차로기준) 차량 진행방향 법적도로너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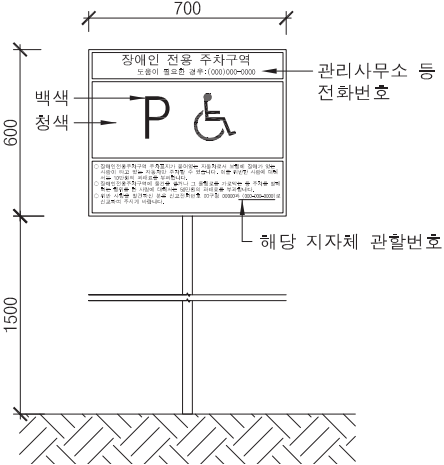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Tip! 기계식주차장의 자동차 대기 공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공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Tip! 바탕: 청색 선 및 장애인전용표시: 백색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다. 유도 및 표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0000 - 0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0000 - 000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Tip!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유도 주차장이 지하 또는 차량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주차장 입구로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다.	1,200 이상 1,200 이상 주출입구 보행 안전 통로 유호 폭 1.2m 이상 보차 분리 설치 바닥 재질 및 색상 등을 구분 P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유도 표지판 P36 확대도 참조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주출입구(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Tip! 외부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계단 점형블록 및 핸드레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Ti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Tip! 점자표지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실명점자 까지 1.5m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안내설비 P82 참조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Tip! 문이 닫혀 있을 경우를 기준으로 문 마감선에서 300mm 전면에서 매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손잡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Tip! 복도의 유효폭은 핸드레일 설치 후 1.2m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손잡이 설치(H : 800~900, 지름 : 32~38)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닥마감선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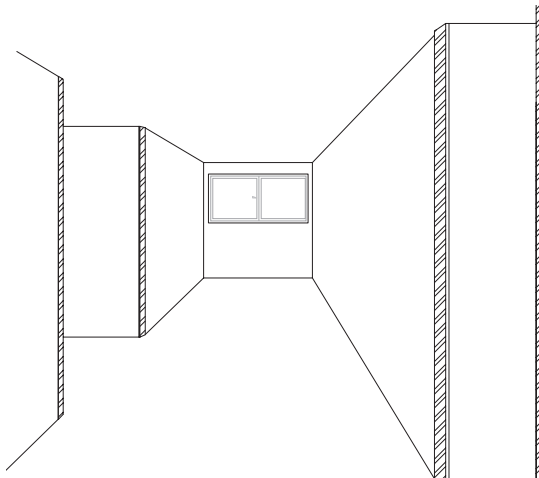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설 치 기 준	상 세 도 (단 위 : m m)	사 례
복도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 m)	사례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점형블럭 (300X300) 방풍실 유효폭 1,200 이상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경사로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길이 1,800이상 / 높이 150이상일 경우 설치 손잡이 설치(H: 800~900, 지름: 32~3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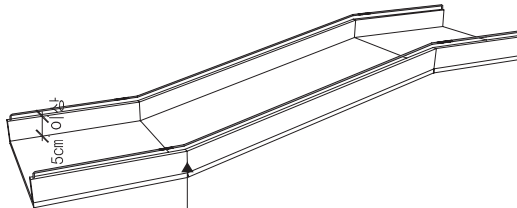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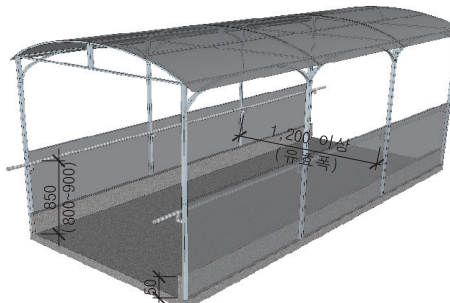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손잡이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경사로 (1/12 이하) 수평손잡이 30cm 연장 점자표지판 부착 미끄럼방지마감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라. 재질과 마감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5cm 이상 설치 (권장)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1)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라. 재질과 마감 (1)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설치 (2) 계단코에는 줄눈 또는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 설치 (3)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단이 시작 및 끝 지점의 0.3미터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마.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2)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설치 (4)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 수평으로 설치 (5) 굵기: 지름 3.2~3.8센티미터 (6) 벽체에서 5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바. 점자 표지판 (1)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 설치 (2)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 부착 Tip! 핸드레일에 부착되는 점자표지판 방향에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촉지방향 → 손잡이와 마주보고 서서, 왼쪽에서 오른쪽방향으로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 (가) 폭: 1.1미터 이상 설치. 다만, 신축은 1.6미터이상 설치 (나) 깊이: 1.35미터 이상 설치 Tip! 13인승 이상 (2) 출입문 유효폭 (가) 0.8미터 이상 설치 (나) 다만, 신축은 0.9미터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안/밖) 모든 스위치 높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높이 1.4미터 이하로 설치		
(2)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가) 높이: 바닥에서 0.85미터 내외로 설치 (나) 위치: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다만, 바닥 유효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반의 형태 (가) 버튼식으로 설치 (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버튼에 점자표시를 설치 (다)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라. 기타 설비 (1) 손잡이 (가)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연속하여 수평손잡이 설치하거나, 3센티미터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나) 지름: 3.2~3.8센티미터 이하로 설치 (다) 이격: 측면에서 5센티미터 이상 설치 (2) 거울 내부에서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 후면에 0.6미터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편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3)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 (가) 외부: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나) 내부: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다)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라)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줄 것 (마) 광감지식개폐장치 설치 경우 바닥에서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유효폭 및 속도 (1) 유효폭: 0.8미터 이상 설치 (2) 디딤판: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 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 속도 및 손잡이 (1) 속도 분당 30미터 이내로 설치 (2) 손잡이 (가) 양측면에 디딤판의 속도와 같이 이동손잡이를 설치 (나) 양끝부분에는 1.2미터 이상 수평이동손잡이 설치 (다)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 고정손잡이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원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바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 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Tip!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대상시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Tip!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영유아용 거치대 포함)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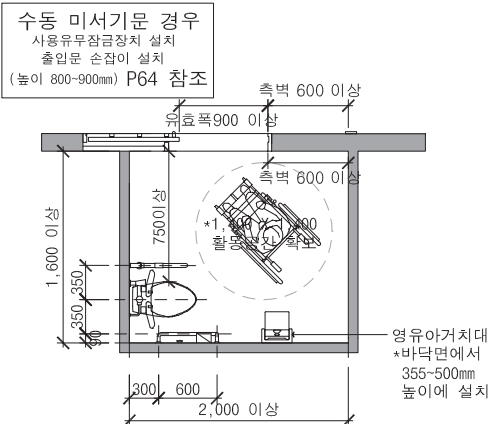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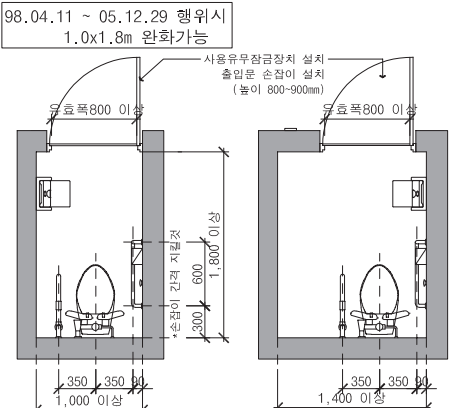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P67~68 참조 공중화장실 P71 참조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신축: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변기 이용 행위와 측면 활동공간]	[변기 이용 행위와 측면 활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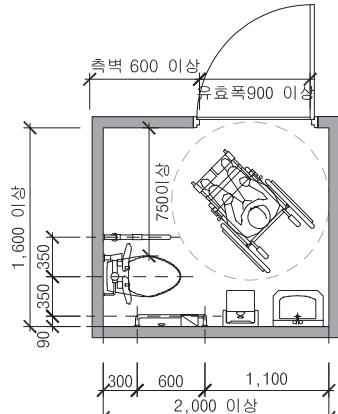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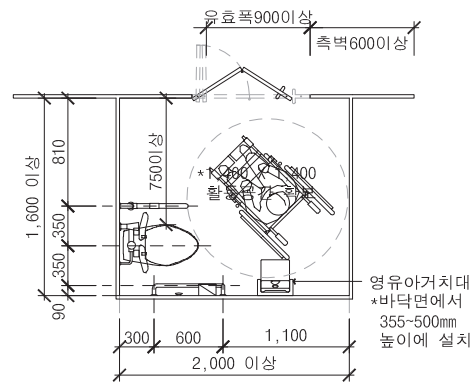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나)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동 미서기문 경우 사용유무잠금장치 설치 출입문 손잡이 설치 (높이 800~900mm) P64 참조 축벽 600 이상 유효폭 900 이상 750 이상 1,600 이상 350, 350 300, 600 2,000 이상 영유아거치대 *바닥면에서 355~500mm 높이에 설치 자동문인 경우	
(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8.04.11 ~ 05.12.29 행주시 1.0x1.8m 완화가능 사용유무잠금장치 설치 출입문 손잡이 설치 (높이 800~900mm) 유효폭 800 이상 1,800 이상 600 300 350, 350 1,000 이상 05.12.30 ~ 18.08.09 행주시 1.4x1.8m 완화가능 1,400 이상 350, 35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대변기 (2) 출입문 (가)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여닫이문인 경우	
(3) 구조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얹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접이식문인 경우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나. 대변기 (4)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P67 참조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대변기 (4) 손잡이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P68 참조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소변기 소변기의 양 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 <table><tr><td>바닥에서 높이</td><td>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td></tr><tr><td>벽면에서 깊이</td><td>0.55미터 내외</td></tr><tr><td>손잡이 간격</td><td>0.6미터 내외</td></tr></table>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벽면에서 깊이	0.55미터 내외	손잡이 간격	0.6미터 내외		
바닥에서 높이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벽면에서 깊이	0.55미터 내외							
손잡이 간격	0.6미터 내외							
▶ 수직손잡이 <table><tr><td>바닥에서 높이</td><td>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td></tr><tr><td>벽면에서 돌출폭</td><td>0.25미터 내외</td></tr></table>	바닥에서 높이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벽면에서 돌출폭	0.25미터 내외				
바닥에서 높이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벽면에서 돌출폭	0.25미터 내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라. 세면대 (1) 구조 <table><tr><td>상단높이</td><td>0.85미터</td></tr><tr><td>하단높이</td><td>0.65미터 이상</td></tr><tr><td rowspan="3">거울</td><td>세로길이</td><td>0.65미터 이상</td></tr><tr><td>하단높이</td><td>0.9미터 내외</td></tr><tr><td>거울형태</td><td>상단 기울기 15도 또는 전면 거울</td></tr></table>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상단높이	0.85미터	하단높이	0.65미터 이상	거울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높이	0.9미터 내외	거울형태	상단 기울기 15도 또는 전면 거울	공중화장실 P65 참조	
상단높이	0.85미터												
하단높이	0.65미터 이상												
거울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높이	0.9미터 내외											
	거울형태	상단 기울기 15도 또는 전면 거울											
(2)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및 구조 (1)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3)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다. 손잡이 및 기타설비 (1)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6)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사례
대상시설	가. 설치장소 및 구조 (1)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3)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기타 설비 (1)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3)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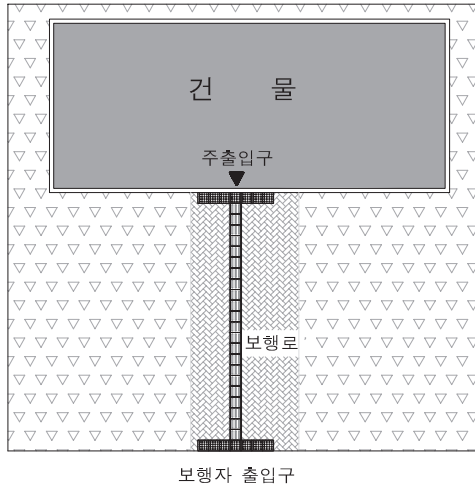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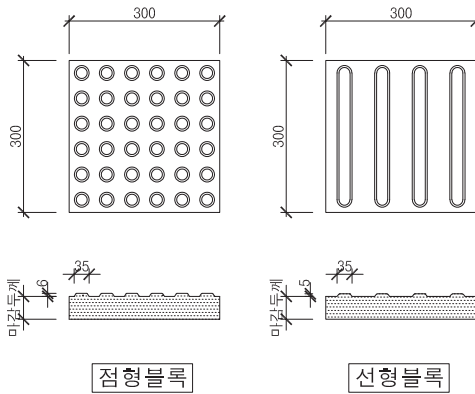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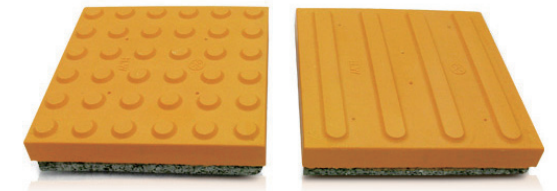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4)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 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신도 포함 높이)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Tip! 점자블록 설치 시 점형블록은 절단불가, 선형블록은 절단가능하다.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규격 및 색상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m)	사례
가. 규격 및 색상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형블록 단면상세도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계단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설치방법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 3단표
부록



장애인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안내설비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Tip! 점자안내판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 설치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같음할 수 있다.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안내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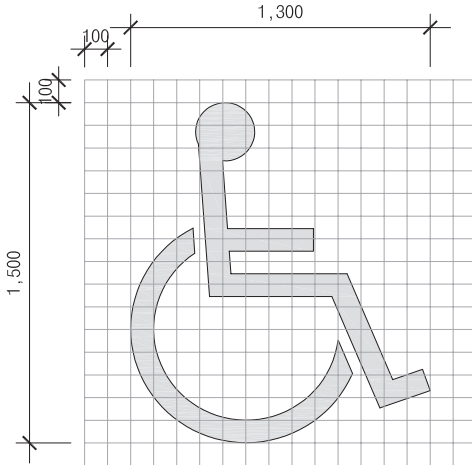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원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안내설비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라. 안내표시기준 (1)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 한다. (2)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남자화장실  사무실 *실명점자안내표지판 크기는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짐	 남자화장실 현위치: 상가동입니다. 남,여 장애인화장실은 오피스텔동 1층에 있습니다.
(5)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장애인이용가능) 여자화장실



장애인 등의 대피가 가능한 경보·피난설비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기준 (1)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 m)	사례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 13호가목(2)(가) · (3)(나), 나목(1)부터 (3)까지 · (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라. 기타 설비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Tip!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 및 피난통로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 활동공간 1400X1400 일반좌석간의 거리의 1.5배 이상 경사로 1/12 이하 활동공간 1500X1500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min. 900 min. 1,300 안전용 위한 손잡이 (H: 800) 안전손잡이 경사로 1/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관람석의 구조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 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점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설 치 기 준	상 세 도 (단 위 : m m)	사 례
나. 관람석의 구조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기루프 FM보청기 (무선식)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 m)	사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설 치 기 준	상 세 도 (단 위 : m m)	사 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나. 구조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 m m)	사례
다. 기타 설비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및 이용자 조작설비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며,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구조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설치기준

상세도 (단위: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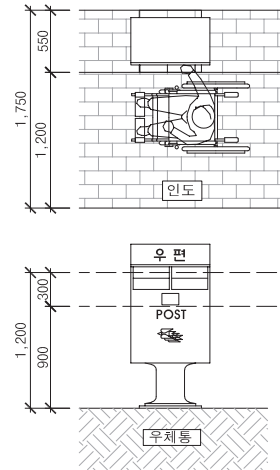
사례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	상세도(단위: mm)	사례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Ⅳ.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시행 2020.10.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 [전문개정 2007.2.12.]	[시행 2019.9.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1.2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1.2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1.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 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 다)할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전문개정 2015.7.24.]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 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1.28.]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5.1.28.]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인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6.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의3(심의회 위원회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6.29.] [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15.12.31.>]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6.29.]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상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5.1.28.]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2015.7.24.>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1.19.>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6.29.]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5.7.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폐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 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표	시행령	시행규칙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5.1.28.]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2015.7.29.>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9.4.]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폐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5.1.28.] [제28조에서 이동 <2015.1.28.>]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제목개정 2015.7.24.] [제14조에서 이동 <2015.7.24.>]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5.23.]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제16조제1항에 따른 철회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28조[제24조로 이동 <2015.1.28.>] 제29조[제9조의3으로 이동 <2015.1.2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0.6.18.] 제14조 삭제 [제2조의로 이동 <2015.7.24.>] 제15조 삭제 <2004.6.29.>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공중화장실
(소변기)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시행령 제5조의2 관련『별표 2의2』] <신설 2015.7.24.>



대상시설	설치기준
제1종근로생활시설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로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시행령 제5조의2 관련『별표 2의2』] <신설 2015.7.24.>



대상시설	설치기준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숙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공장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塗裝)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 · 교도소 · 구치소, 갇혀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혀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 3』] <개정 2016. 7. 6.>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100만원
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1. 공원

(단위: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 중 1곳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90,000	
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변기	1칸	425,000	유효면적 2.52㎡ 필요
		소변기	1대	135,000	
		세면대	1대	135,000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200,000	
3.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2,000	
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 중 1곳 또는 1대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매표소	1개소	240,000	
		판매기	1대	460,000	
		음료대	1대	1,200,000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공원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16.5㎡ 필요
		안내표지판	1대	230,000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공원시설 종류에 따라 해당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4)통신시설의 해당 편의시설의 종류별 산정기준(금액)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단위: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가 장애인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m	255,000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의 설치비용과 이 법령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16.5㎡ 필요
		안내표지판	1대	230,000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2,065,000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사무실등의 출입구(문) 중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735,000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복도의 바닥면에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515,000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함)		m	47,500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35,000,000	유효면적 필요 · '08.1.1.후 신축 - 2.16㎡ · '08.1.1.전 건물 - 1.485㎡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900,000	
		계단에 난슬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26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단위: 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7.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칸)	425,000	유효면적 2.52㎡ 필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5,000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5,000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20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 중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510,000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 중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470,000	유효면적 0.81㎡ 필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375,000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필요가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2,000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474,000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315,000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125,000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단위: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침실 또는 객실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숙박시설은 0.5%) 이상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숙박시설 1실	-	객실당숙박료 × 365일 × 0.4
		기숙사 등 기타 1실	2,690,000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석 1석	275,000	유효면적필요 1.17㎡
		열람석 1석	180,000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접수대 또는 작업대 중 동일 장소에 적어도 1대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40,000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는 1곳 또는 1대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매표소 1개소	240,000	
		판매기 1대	460,000	
		음료대 1대	1,200,000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3. 공동주택

(단위: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를 장애인 등의 통행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m	255,000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의 설치비율과 이 법령의 설치기준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16.5㎡ 필요
		안내표지판	1대	230,000	
3.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어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2,065,000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735,000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35,000,000	유효면적 필요 · '08.1.1.후 신축 - 2.16㎡ · '08.1.1.전 건물 - 1.485㎡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900,000	
		계단에 논슬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26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6.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해당 편의시설 종류별 산정기준금액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88호, 2018.8.29 일부개정]



4. 통신시설

(단위:원)

편의시설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500,000	
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우체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00,000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시행규칙 제3조 관련『별표3』]



대상시설		설치기준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파란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8] [경기도조례 제6738호, 2020.10.8., 일부개정] 경기도(장애인복지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5.11.〉
4. “실태점검”이라 함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6.17.]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5.11.〉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개정 2015.1.14〉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4.]〈개정 2020.10.8.〉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경기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5.06.17.]
- ③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점검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

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 편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6.17.]

- ③ 실태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7.]

제9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0.10.8.〉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설주관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5.11.〉

제11조(점검요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개정 2015.06.17.〉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5.1.14.]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신설 2015.1.14.]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5.1.14.]
-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폐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증진법3단표
부록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8] [경기도조례 제6738호, 2020.10.8., 일부개정] 경기도(장애인복지과)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제15조(점검결과와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와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6.17.]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6.17.]

제18조(실태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6.17.]

제19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의시설 설치 관계법 발췌

(주차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8.4.,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별표 1] <개정 2019.3.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표 (각 조례 발췌)

시군명	비율(%)	시군명	비율(%)
가평군	4%	안양시	2%
고양시	4%	양주시	3%
과천시	3%	양평군	2%
광명시	3%	여주시	4%
광주시	2%	연천군	2%
구리시	4%	오산시	2%
군포시	3%	용인시	4%
김포시	3%	의왕시	3%
남양주시	3%	의정부시	3%
동두천시	3%	이천시	3%
부천시	2%	파주시	40대 당 1대
성남시	2%	평택시	3%
수원시	3%	포천시	2%
시흥시	3%	하남시	3%
안산시	4%	화성시	4%
안성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0.5.26.]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9.] [경기도조례 제5723호, 2017. 9. 29., 일부개정]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경기도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 2."사후관리"라 함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9.29.〉
- 3."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을 말한다.
- 4."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사항은「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신설 2017.9.29.〉

제3조(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교직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교육감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 ② 적합성 확인의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7.9.29.〉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 ④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개정 2017.9.29.〉

제7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① 적합성 확인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 ② 교육감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개정 2017.9.29.〉

- ③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9.29.〉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9.29.〉

제8조(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련 업무를 대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9.29.〉

- ② 제1항에 따른 요원에는, 점검대상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5.7.〉〈개정2017.4.11.〉〈개정 2017.9.29.〉

③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9.29.〉
2.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9.29.〉

제9조(편의시설 업무담당자의 의무) ① 편의시설 업무담당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적합성 확인의 취지를 알리고, 적합성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 ② 편의시설 업무담당자는 편의시설을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적합성 확인 담당자에게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 ③ 시설주는 적합성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11조(실태조사의 보고) ① 적합성 확인 담당자는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에 참여한 조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의 반영) ① 교육감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14.5.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7.〉〈개정 2017.9.29.〉

부칙 **〈제572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9.] [경기도조례 제5707호, 2017.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도내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전문개정 2015.4.8.]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2017.9.29.>

- 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 ④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3. 버스중앙차로제 운영 구간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전문개정 2017.9.29.]
 4.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신설 2017.9.29.]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9.29.]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8.>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5.4.8.]
- 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개정 2015.4.8.>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①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 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4.8.>
- ④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5.1.14.] <개정 2015.1.14., 2015.4.8.>

1. 도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5.1.14.]
-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대변기)
공중화장실(소변기)
공중화장실(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패널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점/판매기/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9.] [경기도조례 제5707호, 2017.9.29., 일부개정]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사위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와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현황



■ 경기센터 : ☎ 031-253-7723 FAX : 031-246-7721

■ 홈페이지 : <http://www.udcenter.org>

지역	전화번호	팩스
가평군센터	031-581-1660	031-581-1661
고양시센터	031-976-0938	031-976-0923
과천시센터	02-502-9415	02-507-6788
광명시센터	02-2625-9555	02-2617-5088
광주시센터	031-766-6005	031-766-1371
구리시센터	031-568-0044	031-557-5877
군포시센터	031-397-1277	031-399-1150
김포시센터	031-984-0103	031-985-1273
남양주시센터	031-511-3621	031-511-3659
동두천시센터	031-859-1117	031-859-1118
부천시센터	032-614-7305	032-613-7305
성남시센터	031-734-5826	031-722-5826
수원시센터	031-257-3546	031-257-6670
시흥시센터	031-431-0881	031-432-3525
안산시센터	031-485-4541	031-485-4521
안성시센터	031-676-8058	070-8650-0985

지역	전화번호	팩스
안양시센터	031-443-1367	031-447-8434
양주시센터	031-868-3802	031-868-4238
양평군센터	070-7443-0964	031-774-8215
여주시센터	031-882-0787	031-882-0717
연천군센터	031-833-6117	031-835-6117
오산시센터	031-373-8844	031-373-9945
용인시센터	031-334-3440	031-336-1322
의왕시센터	031-456-6114	031-456-6117
의정부시센터	031-878-7760	031-871-1158
이천시센터	031-634-1256	031-637-1356
파주시센터	031-947-9535	031-947-9570
평택시센터	031-618-1327	031-618-1328
포천시센터	031-531-0337	031-531-0565
하남시센터	031-793-3828	031-793-3829
화성시센터	031-356-1459	031-355-4162

대상시설
설치기준/종류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문)
내부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공중화장실 (대변기)
공중화장실 (소변기)
공중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파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 휴게실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3단표
부록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8판을 내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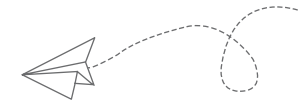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 어느덧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적용되어 왔으나, 2021년 현재에도 설계과정과 시공현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2009년 초판을 낸 이후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심 있는 대중의 많은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 장애인등편의법의 대폭적인 개정 이후 해석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경기도 내 편의센터 직원들이모여 연구한 끝에 개정8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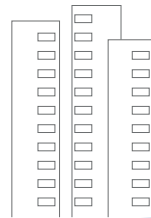
개정8판에서는 최신 법령해석 기준에 맞게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설치사례 사진을 보강하였고, 특히 가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 개정판 출간에 노력해준 편의증진 매뉴얼 개정 TF팀 모두와 또 이 모든 작업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기호 경기도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편의증진연구소 -





초 판 발 행 : 2009년 8월

개정8판발행 : 2021년 1월

발 행 인 :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 김기호

기 획 : 한은정, 이기표

편 집 총 괄 : 이기표

편 집 기 획 : 박시영, 신은정, 오세욱, 조연수, 이은규, 윤규원, 이보미, 조아름

발 행 처 :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24번길 17

(031) 253-7723 (<http://udcenter.org>)

Copyright © 2021,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 매뉴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2021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